

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

-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(8.21) -
- 출생미신고 아동,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-

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, 소재·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.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8월 21일(월) 국무회의에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*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‘e아동 행복지원시스템’으로 연계하여,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(별표 2 제3호).

* (임시신생아번호)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·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로,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 (임시관리번호)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로,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

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”이라며, “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,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

< 별첨 > 「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

담당 부서 <총괄>	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	책임자	과 장	왕형진 (044-202-3140)
		담당자	사무관	임현묵 (044-202-3144)
<아동학대 발굴>	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	책임자	과 장	조우경 (044-202-3380)
		담당자	사무관	권용환 (044-202-3381)

붙임

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

- (목적)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* 활용으로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위기아동 조기 발견·예방
 - * 예방접종미접종, 건강검진미검진, 장기결석,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
- (내용)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 → 필요 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·제공, 학대 신고 등 처리
- (대상) 18세 미만인 아동 중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아동(분기별 3만 명)
 - 분기별 ①모형(AI)을 통한 발굴 약 2.5만 명, ②기획 발굴 약 5천 명
 - * (모형(AI)통한 발굴) 44종의 정보 및 분기별 조사결과 등을 모형이 학습하여, 위기아동을 발굴(머신러닝, 딥러닝방식)
 - ** (기획발굴) 모형발굴 외 특정위기변수 조건 대상자 등을 발굴(위기변수 변경가능)
 - ※ 위기아동 총 3만 명의 규모는 제한된 지자체 담당자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→23년 1차부터 총 3만 명(모형발굴 2만 5천 명, 기획발굴 5천 명) 확대 시행
- (조사 시기) 분기별 시행 (1, 4, 7, 10월)

<e아동행복지원사업 분기별 시행 내용>

1차(1월)	2차(4월)	3차(7월)	4차(10월)
모형발굴 + 기획발굴			3세 전수조사*

* 만36~48개월까지 아동 중 어린이집·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조사

- (조사 주체) 읍면동 공무원(아동 담당 및 맞춤형 복지 담당자 협업)
<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절차>

